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공보

선람	기관의장

제573호 2018. 08. 30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15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----------2
○ 사천시 고시 제15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-----3
○ 사천시 고시 제15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----------4

회람					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8-15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8. 30.

사 천 시 장

1. **점용·사용 승인번호** : 제2018 - 04호
2. **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** : 2018년 8월 17일
3. **점용·사용의 목적**
   - ○ 월등도 해안둘레길 목재데크 설치
4. **점용·사용의 장소**
   - ○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-3번지선 공유수면
5. **점용·사용의 면적** : 474㎡
6. **점용·사용의 기간** : 2018년 8월 17일 ~ 2048년 8월 16일(30년)
7. **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**
 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지역개발과장)
 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사천시 고시 제2018-155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8. 30.

사 천 시 장

1. **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** : 제2018-03호 (2018. 7. 18.)

2. **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·주소**

○ 성 명 : 최 종 명

○ 주 소 :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976

3. **공사 내용**

○ 새우양식장 해수인입을 위한 급수 및 배수관로 설치

4. **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**

○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19-76번지 외 1필지선(119-101)

5. **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**

○ 2018. 8. 27.

사천시 고시 제2018-15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8. 30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8-4호 (2018. 8. 17.)
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○ 성 명 : 사천시장(지역개발과장)

○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
○ 월등도 해안둘레길 목재데크 설치
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
○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-3번지선 공유수면
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
○ 신고번호 : 제2018-8호

○ 공사기간 : 2018. 8. ~ 2019. 12.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8. 27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
○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
○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